

#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6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 29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1. 30  
다. 상정·의결일자 : 2001. 3. 2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이유

-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민영노외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자율화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 등 군민에 대한 행정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3. 주요골자

- 가.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 조항 삭제(안 제3조제3항)  
나. 민영노외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 자율화(안 제6조)  
다. 주차장의 설치관리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주차요금의 환불범위 세부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마.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 삭제(안 제13조)  
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조항을 새로운 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완화 및 구체화 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에 이종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

- 주민의 부담이 되었던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 미납부자에 대한 부담 금액을 낮추어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입법에고 절차를 거쳐 회부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가산금 부담금액을 4배에서 2배로 낮추었을 때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은 지역여건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1. 3.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